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844

발의연월일: 2021. 7. 30.

발 의 자: 박완수·권영세·김용판

김태호 • 이종배 • 태영호

강기윤 · 조경태 · 최형두

추경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5년간,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 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10년간 공무담임이 제한됨.

그런데 「형법」이 개정(2016. 1. 6. 개정, 2018. 1. 7. 시행)됨에 따라 집행유예의 요건이 완화되어 3년 이하의 징역·금고의 형뿐만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집행을 유예할수 있게 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개정 「형법」의 시행에 따라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공무담임이 5년간 제한되는 반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공무담임이 10년간 제한되어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공무담임이 10년간 제한되는 사유를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로 명 확히 하여 「형법」 개정에 따른 「정치자금법」상의 처벌 규정 혼란 을 바로 잡고자 함(안 제57조). 법률 제 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 중 "형의 집행유예"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로, "벌금 형"을 "벌금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확정된 사람의 공무담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정한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7조(정치자금범죄로 인한 공무	제57조(정치자금범죄로 인한 공무
담임 등의 제한) 제45조(정치자	담임 등의 제한)
금부정수수죄)에 해당하는 범죄	
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	
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	
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	
0년간, <u>형의 집행유예</u> 의 선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	
0년간, 100만원 이상의 <u>벌금형</u>	<u>벌금형</u>
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집행유예를 포함한다)
확정된 후 5년간 「공직선거	
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	
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	
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